

#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 및 부칙<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>제 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별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. 12. 31.을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특별회계의 설치·운영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명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6조를 제7조로 하고,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(안 제6조)
  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. 12. 31.까지로 정함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2018. 10. 12. ~ 2018. 11. 1.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- 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제7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6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  <u>제6조</u> (생 략)	<u>제6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                     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                     한다.</u>  <u>제7조</u> (현행 제6조와 같음)

# 관계 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[전문개정 2011. 8. 4.]

## □ 지방재정법 부칙<법률 제16287호, 2014. 5. 28.>

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.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김명기
연락처	(033) 330 - 2210